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2023. 12.



충청남도의회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과제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시 : 2023년 12월 15일

과제수행 참여 연구원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연구수행참여자	
	소속기관	성 명	소속기관	성 명
지역식품 순환체계 활성화를 위한 학교급식 지원정책	공주대학교	윤 혜 려	공주대학교	오 민 영

목 차

I. 연구배경

II.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급식비 현황

1.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1) 전국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2) 시도별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3)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
 - (4) 급식지원센터 역할
2. 학교급식 현황
 - (1) 전국 학교급식 현황
 - (2) 학교급식 주요품목 등 생산 소비현황
3. 충청남도 도내 시군 학교급식 주요실적
 - (1) 충청남도 학교급식 현황
 - (2) 광역급식지원센터 주요실적
 - (3)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III. 학교급식 관련 법률 및 현황

1. 교육부 소관 학교급식 관련 법령
 - 1-1. 학교급식 관련 법률 및 현황
2. 지방자치단체 소관 학교급식 관련 조례
 - 2-1.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
 - 2-2.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IV. 충청남도 학교급식정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시

1.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파악 및 운영현황 분석
2.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례
 - (1)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 (2)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 (3) 천안·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별 공통점과 차이점
3.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4.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방법
 - (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의 필요성
 - (2) 충청남도 학교급식 농가조직화 구축방안
 - (3) 작부체계 및 농가조직화 사례

[부록]

부록 1. 농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참고문헌]

표 차례

<표 1-1> 학교급식법

<표 2-1> 전국 시도별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표 2-2> 17개 시도별 운영현황

<표 2-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표 2-4> 급식센터 수립·운영 형태

<표 2-5> 식재료 공급식 문제점

<표 2-6> 2022년도 전국학교급식 현황표

<표 2-7> 시도별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표 2-8> 지출 항목별 예산 현황(%)

<표 2-9> 시도별 급식예산 및 학교급별 예산현황

<표 2-10> 학교급식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

<표 2-11> 충청남도 15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표 2-12> 광역급식지원센터 추진상황

<표 2-13> 식재료 확보 경로

<표 2-14> 연도별 소비량

<표 2-15> 농산물 소비품목

<표 2-16> 축산물 소비품목

<표 2-17> 가공식품 소비품목

<표 2-18> 식재료 총 공급규모

<표 2-19>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및 분석 [공급량 기준]

<표 2-20>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및 분석 [공급액 기준]

<표 3-1> 학교급식법의 구분

<표 3-2> 학교급식법

<표 3-3> 교육부령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표 3-4>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표 3-5>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표 3-6> 전국 지자체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 현황

<표 3-7>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표 4-1>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표 4-2>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현황

<표 4-3> 천안산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

<표 4-4> 공공급식 활성화 방안

<표 4-5>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현황

<표 4-6> 전체 농산물/공산품 취급현황

<표 4-7>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징

그림 차례

<그림 1> 식재료 유형별 주요 공급경로

I.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2006년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의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의 주된 목적은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에 있음이 학교급식법 제5조 제 ④항과 ⑤항에 규정되어 있다.

< 표 1-1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06년 12월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 지침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2007-2011년)]에서 법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센터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센터의 제도의 위상을 확고히 하였고, 학교급식 식품비, 시설 등 급식경비 등을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남도에서는 2011년 초등학교부터 2014년 중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원하였고, 2011년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15개 중 시군 14개 시군

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는 학교급식 실태조사,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유통 및 공급관리,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시군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 간의 급식업무 협의,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단순한 물류 기능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총괄하는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 정책으로 진행된 학교급식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며, 원활한 지역농산물의 체계적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체계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 방향 및 협력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학교 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급식비 현황

1.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본 보고서에서는 급식지원센터를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의 형태로 학교 등 공공급식기관에 공급되는 지역생산 우수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자체가 승인한 시설과 운영조직으로 정의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전국적 현황과 각 시도별로 해당 급식지원센터가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범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함.

(1) 전국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 급식지원센터는 2021년 기준 전국적으로 116개 지자체(광역시 8개 포함)에서 128개 급식지원센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 단위 17개 광역 지자체 중 8개 광역지자체가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시군구 단위 228개 중 128개 기초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표 2-1 > 전국 시도별 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구분	급식지원센터 운영		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기관					
	지자체 (광역)	급식지원 센터	교육		복지 (지역아동 센터 등)	보건 (국공립 병원 등)	안녕·질서 (군대·교정 시설)	공공행정 (행정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서울특별시	14(1)	11	14	1	13	0	0	0
부산광역시	3	3	1	3	0	0	0	0
대구광역시	0	0	0	0	0	0	0	0
인천광역시	1(1)	1	0	0	0	0	0	0
광주광역시	4	4	3	4	0	0	0	0
대전광역시	1(1)	1	0	1	0	0	0	0
울산광역시	5	2	0	2	0	0	0	0
세종자치시	1(1)	1	1	1	0	0	0	1
경기도	16(1)	13	9	13	0	0	0	0
강원도	5	5	0	5	0	0	1	2
충청북도	2	2	0	2	0	0	0	0
충청남도	15(1)	14	13	13	2	0	0	7
전라북도	14	14	14	14	5	0	2	3
전라남도	7	7	6	7	3	1	1	1
경상북도	23(1)	45	28	44	0	2	0	1
경상남도	4	4	4	4	0	0	0	0
제주자치도	1(1)	1	1	1	0	0	0	0
전국	116(8)	128 (100.0%)	94 (73.4%)	115 (89.8%)	23 (18.0%)	3 (2.3%)	4 (3.1%)	15 (11.7%)

< 자료 : 계간 농정연구, 2022 >

- 서울특별시는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13개 자치구의 공공급식지원센터 1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 2,103개교 중 1,351개교(64.2%)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 울산광역시 북구·동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중구·남구, 경기도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와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는 공동으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부산광역시는 기초지자체인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의 지역농협 조직에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센터를 운영함.
- 인천광역시는 행정기능 중심 컨트롤 타워형의 광역 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광주광역시는 4개 기초지자체에서 직영형의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
- 대전광역시는 행정직영형의 광역단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함.
- 울산광역시는 권역별로 2개의 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 직영형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여 초·중·고 등에 식재료를 공급함.
-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자체 직영형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등에 식재료를 공급함.
- 경상북도,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는 대부분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반면,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및 충청북도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거나, 1~2개만 운영하고 있어 시도별 편차가 큼.

(2) 시도별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 표 2-2 > 17개 시도별 운영현황

구 분	특 징
서울특별시	-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함께 13개 자치구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11개소 운영 - 광역 단위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운영주체로,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 - 13개 자치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운영 중인 공공급식 지원센터는 민간 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및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 지자체와 협력하여 식재료를 공급하는 ‘도농상생공공급식’ 사업에 참여

부산광역시	- 기초지자체인 금정구, 강서구 및 기장군에서 친환경농산물급식지원센터를 지역 내 농협 조직이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지만, 일반농산물은 미공급
인천광역시	-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직영체계로, 식재료를 직접 공급하지 않고 행정기능 중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광주광역시	- 4개 기초지자체에서 각각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 동구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초·중·고를 중심으로 식재료를 공급 - 서구, 남구 및 광산구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어린이집 및 초·중·고(유치원 포함)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 - 광주광역시의 급식지원센터는 운영 형태가 모두 지자체 직영
대전광역시	- 광역단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를 행정직영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식재료를 중심으로 공급
울산광역시	- 5개 기초지자체에서 권역별로 2개의 급식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지자체 직영체계로 초·중·고 만을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 지자체 직영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행정기관(정부청사)에 식재료를 공급
경기도	-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함께 13개 기초지자체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 11개소를 운영 - 광역 단위인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재)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를 제외한 경기도 전체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친환경·G마크 식재료를 공급 -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는 자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재료를 공급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및 과천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시흥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수원시, 안산시, 하남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지 않는 품목(쌀, 수산물, 가공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초·중·고 학교급식을 관리
강원도	- 5개 기초지자체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춘천시는 (재)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초·중·고 및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 - 원주시는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초·중·고, 군대 및 행정기관에 식재료공급 - 그 외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 급식지원센터는 초·중·고 학교를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 - 춘천시를 제외한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 정선군의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농협 조직
충청북도	- 2개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 진천군은 진천군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하며, 운영 주체는 영농조합법인 조직 - 음성군은 행정직영 체계이며, 급식지원센터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 급식에 식재료 공급
충청남도	- 광역단위 급식지원센터와 14개 기초지자체 전체가 급식지원센터 13개소 (논산시와 계룡시 공동 운영) 운영 - 광역 단위인 충청남도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가 직영하고 있으나, 직접 식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은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시·군별 잉여·부족 식재료 배분 및 공동구매 기능 중심의 지원 기능 수행 - 기초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전체가 관내 초·중·고 학교급식에 농·수·축·가공 모든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지역별로 보면,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농협 조직, 청양군은 재단법인, 그 외 지자체는 직영방식으로 운영 - 천안시, 공주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급식지원센터는 초·중·고 학교급식 외 어린이집·유치원, 행정기관 등에 식재료 공급 - 보령시 및 아산시 급식지원센터는 수련원, 교육원 등에 식재료 공급 - 서천군 및 청양군 급식지원센터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에 식재료 공급
전라북도	- 14개 기초지자체 모두 각각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 - 전주시는 공공급식지원센터, 군산시는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완주군은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의 나머지 지자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전주시공공급식지원센터,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완주공공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복지시설 및 행정기관에 식재료 공급 - 익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남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김제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복지시설 및 안녕·질서 기관에 식재료 공급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부안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재료(친환경 농산물) 공급 - 순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재료(친환경 농산물) 공급 -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의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 익산시, 남원시,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농협 조직 - 그 외 정읍시, 김제시, 진안군, 장수군, 고창군 및 부안군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
전라남도	- 7개 기초지자체에서 급식지원센터 운영 - 목포시, 여수시, 해남군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 - 영광군 및 강진군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및 복지시설에 식재료 공급 - 나주시공공급식지원센터는 초·중·고 학교급식, 복지시설, 보건시설 및 행정기관에 식재료 공급 - 담양군 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및 안녕·질서 시설에 식재료 공급 - 나주시와 해남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 -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강진군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는 농협 조직
경상북도	- 광역 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과 함께 울릉군을 제외한 22개 기초지자체에서 농산물 및 축산물 각각의 학교급식지원센터 44개소 운영 - 시·군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자체 조달하고, 관외 친환경 농산물은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공급 - 경북광역급식센터는 농협 조직이 운영 주체, 시·군별 농산물 및 축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지역농협, 농업법인 및 일부 급식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 김천시, 울진군 농산물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 외 보건시설, 행정기관, 관광기관 등에 식재료 공급
경상남도	- 4개 기초지자체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김해시 외 밀양시, 남해군, 거창군은 지역 푸드플랜에 기반한 지자체 직영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였던 거창군은 푸드플랜 수립 이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 -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 중심으로 식재료 공급
제주도	- 지자체 직영의 광역단위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기능 및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형 학교급식지원센터 - 3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식재료 공급업체(친환경 농업법인)를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

< 자료 : 정상택, 2022 >

(3) 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주체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의의 및 개념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식재료 소비처인 학교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수급과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과 더불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 농촌경제 활성화, 성장기 학생의 건강증진, 수입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순환 식품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은 < 표 2-3 >과 같음.

< 표 2-3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개념

구분	내용	근거
설치 목적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지원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	학교 급식법 지자체 학교급식 지원조례
정의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체계	
설치 권자	특별자치도시자 ·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	
센터 업무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관할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학교 급식업무 협의 5. 대상학교별 급식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센터 시설	지자체 유형에 따라 컨트론타워형, 물류형, 복합형 등의 시설을 갖추어 운영 할 수 있음	
센터 형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형태	
센터 운영	행정 직영 또는 비영리 법인, 자원봉사단체, 민간기구에 위탁할 수 있음	

< 자료 : 김지연, 2021 >

□ 급식지원센터의 설립

- 급식지원센터 대부분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확대, 2015년 이후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와 연계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함.
- 2010년대 초반 설립된 경우 학교급식지원 조례에 의해 수립된 사례가 많았으며, 2015년 이후 설립된 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지역 먹거리 육성 및 지원조례, 공공급식지원조례 등 학교급식에서 공공급식으로 확대된 개념의 설립 사례가 많았음.
- 급식지원센터 명칭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명칭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공공급식 사업 범위 및 역할도 다르게 나타남.
-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학교급식 지원센터와 통합되어(완주시와 전주시) 운영되거나, 지역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나주시)되거나, 광역단위별 운영(세종특별자치시) 범위로 운영하기도 함.

□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주체

- 운영 주체별로 법인형, 위탁형, 행정형으로 구분되며, 법인형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형태이고,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사업 추진 방향은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식재료 계약, 수급, 안전관리,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을 행정조직에서 담당함. 지자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급식지원센터 산하의 실행조직으로 운영함.
- 위탁형은 지역농협, 사회적기업, 생활협동조합 등 다양한 유형의 민간단체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함.
- 행정형은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시민단체 인력을 고용하여 운영하며, 지자체가 급식 및 식재료 공급 전반에 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함.
- 지자체 직영의 경우 공공급식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한 매출에 대해 직접 계약을 하지 않거나, 세외 수입으로 해결하는 특징이 있음.

- 시설이 입지한 지역의 생산기반 보유 여부에 따라 생산기반 보유형과 미 보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지원센터는 생산기반 미보유형의 사례로서, 안정적 식재료 공급을 위해 특정 산지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내 급식 기관, 시설 등에 식재료를 공급함.

< 표 2-4 > 급식센터 수립·운영 형태

구분	유형	주요사례
운영체계 (학교급식센터와의 관계)	통합운영	완주군, 전주시
	독립운영	나주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운영단위	광역단위	세종특별자치시
	기초단위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나주시, 완주군
운영주체	법인형	완주군, 나주시, 전주시
	위탁형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
	행정형	세종특별자치시
시설입지(생산기반 유무)	생산기반 미보유형	서울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생산기반 보유형	완주군, 전주시, 자주시, 세종특별자치시

< 자료: 황윤제, 2019 >

(4) 급식지원센터의 역할

-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식재료의 공급을 위한 계약 및 수발주, 생산자 조직 관리, 상품화, 물류 및 배송, 안전성 검사, 클레임 대응, 정산 등의 주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 식재료 교류, 안전성 확보, 식단 조정, 식생활 교육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연계조직 관리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함.
- 급식지원센터의 조직은 학교급식지원을 주로 하는 센터의 경우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 하는 반면, 공공급식 외 로컬푸드 유통 등을 운영하는 센터의 경우 다수의 팀을 구성 하여 업무를 담당함.
- 급식지원센터의 시설은 급식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물류장, 저온창고 및 배송차량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소분장이나, 식생활교육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식재료 공급 시 문제점

< 표 2-5 > 식재료 공급시 문제점

공공기관별 식재료 공급시 문제점		
공공기관별	1	식단가 차이로 인한 동일한 식재료 공급단가 적용 문제
	2	보조금, 자부담, 입찰, 수발주, 결제 등 사업 집행 방식의 차이로 인한 대응 어려움.
	3	계약시스템의 차이로 인한 대응 어려움.
	4	영양사 및 행정지원 인력 부족에 대한 서비스의 한계
	5	지역농산물은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인식
	6	기존 급식 업체들의 시장 축소에 대한 민원
	7	소규모 공공기관에 대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비효율성
	8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반 식재료 공급업체로 인식
	9	먹거리 및 공공급식에 대한 이해부족
	10	최저가 중심의 구매 관행
내부적 한계	11	공공급식 확대에 따른 급식지원센터의 시설 및 인력부족
	12	학교급식 외 공공기관별 대응 역량 부족
	13	지속가능하지 않은 농가조직화 수준
	14	제한된 식재료 공급기반 조성
	15	지역·우수 농산물에 대한 적정단가 책정 기준 부재
	16	보조금 중심의 공공급식 추진 관련 자료 체출 요구
정치적 여건	17	지자체장의 정치적 성향으로 인한 기존 공공급식 정책 및 사업(예산)이 축소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공급식 사업 또한 축소되는 문제점

< 자료 : 황윤제, 2019 >

2. 학교급식 현황

(1) 전국 학교급식 현황

□ 전국 학교급식 학교/학생 현황

◆ 2022년 전국 학교급식 실시현황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987개교에서 11,987(100%) 급식을 실시함.
- 1일 평균 531만명에게 급식(전체 학생 대비99.8%) 지원함.
- 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3명임.
- 직영급식 11,751교(98%) : 단독조리 9,458교(80.5%), 공동조리 2,293(19.5%)
- 위탁급식 236교(2%) : 일부위탁 189교(80.1%), 전부위탁 47교(19.9%)
- * 운영위탁 8교, 외부운반(도시락 등) 39교

< 표 2-6 > 2022년도 전국학교급식 현황표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명)			운영형태(교)	
	전체	급식	%	전체	급식	%	직영(%)	위탁(%)
초등학교	6,158	6,158	100	2,672,550	2,671,157	99.9	6,148	10
중학교	3,262	3,262	100	1,349,153	1,345,410	99.7	3,237	25
고등학교	2,375	2,375	100	1,271,322	1,267,759	99.7	2,175	200
특수학교	192	192	100	27,590	27,407	99.3	191	1
합계	11,987	11,987	100	5,320,615	5,311,733	99.9	11,751	236

< 자료 - 교육부 - 2023.09.11. 기준 >

□ 시도별 급식학교 및 학생 수 현황

- 2022년 충청남도의 경우 726개교, 학생수 234,057명으로 나타남.

< 표 2-7 > 시도별 급식학교 및 학생수 현황

시도	학교수(교)						학생수(명)					
	전체	급 식					전체	급 식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울	1,347	605	389	321	32	1,347	814,227	392,627	205,881	211,490	4,229	814,227
부산	631	304	170	142	15	631	299,976	154,672	74,743	68,669	1,892	299,976
대구	464	233	125	95	11	464	244,456	121,951	61,863	57,625	1,712	243,151
인천	542	263	142	127	10	542	311,812	159,578	78,775	71,614	1,845	311,812
광주	320	154	93	68	5	320	171,638	84,536	44,041	41,971	1,090	171,638
대전	307	150	89	62	6	307	158,122	77,550	40,342	39,158	1,072	158,122
울산	247	121	65	57	4	247	129,789	66,463	33,037	29,541	748	129,789
세종	101	52	27	21	1	101	54,437	31,354	13,557	9,339	187	54,437
경기	2,503	1,325	654	486	38	2,503	1,502,625	771,642	378,469	339,932	5,202	1,495,245
강원	620	334	162	115	9	620	154,450	71,556	37,970	44,097	827	154,450
충북	476	256	128	82	10	476	167,234	84,154	42,751	38,956	1,305	167,166
충남	726	412	186	118	10	726	234,057	116,661	59,914	56,208	1,274	234,057
전북	776	422	211	133	10	776	190,139	91,595	49,063	48,358	1,123	190,139
전남	828	425	250	144	9	828	180,345	88,746	45,440	44,861	1,169	180,216
경북	926	473	261	184	8	926	256,888	127,724	64,524	63,182	1,458	256,888
경남	977	511	265	190	11	977	370,070	188,720	94,914	84,665	1,771	370,070
제주	196	118	45	30	3	196	80,350	41,628	20,126	18,093	503	80,350
합계	11,987	6,158	3,262	2,375	192	11,987	5,320,615	1,931,929	968,678	913,436	18,804	3,832,847

< 자료 : 교육부 2023.09.11. 기준 >

□ 학교급식 인력 현황

◆ 급식인력

- 영양(교)사 · 조리사 · 조리원 등 총 74,156명이 배치되어 있음.(교당 평균 6명)
- 영양(교)사 :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10,729개교)에 11,158명이 배치되어 있음.
- 조리사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10,729개교)에 10,940명이 배치되어있음.
- 조리원 :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에 52,058명이 배치되어 있음.(교당 평균 4명)

< 표 2-10 > 학교급식 직종별 인력배치 현황

구 분	급식 학교수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계(명)		
		영양 교사	영양사		정규직	공무직 기타	정규직	공무직 기타	정규직	공무직 기타	계
			정규직	공무직 기타							
초	6,158	4,445	38	1,217	1,128	4,674	67	24,896	5,678	30,787	36,465
중	3,262	961	13	1,494	60	2,383	18	12,079	1,052	15,956	17,008
고	2,375	1,226	43	1,522	169	2,317	105	14,335	1,543	18,174	19,717
특	192	155	16	28	73	136	19	539	263	703	966
계	11,987	6,787	110	4,261	1,430	9,510	209	51,849	8,536	65,620	74,156

<자료 : 교육부_2023.09.11. 기준>

□ 학교급식 예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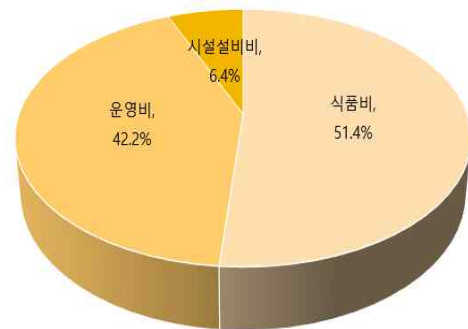
- 전국 학교급식 예산 규모는 2023년 기준 7조 831억원 임.

◆ 지출규모

- 지출 항목은 식품비, 운영비, 시설·설비비 등으로 나누어지며, 이중 식품비가 전체 5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표 2-8 > 지출 항목별 예산 현황 (%)

식품비		3조 6,382억원	(51.4%)
운 영 비	인건비	2조 5,684억원	(36.2%)
	연료비 기타	3,638억원	(5.1%)
	시설유지비	627억원	(0.9%)
	소 계	2조 9,949억원	(42.2%)
시설·설비비		4,500억원	(6.4%)
계		7조 831억원	(100%)



<자료 : 교육부 2023.09.11. 기준>

□ 시도별 급식예산 현황

- 2022년도 기준 시도별 급식예산 <표1-9> 제시하였으며, 충남의 경우 항목별 예산액이 식품비는 186,759백만원, 운영비 181,021백만원, 시설비 52,329백만원 이었음.

< 표 2-9 > 시도별 급식예산 및 학교급별 예산현황

시도	항목별 예산액(백만원)				학교급별 예산액(백만원)				
	식품비	운영비	시설 설비비	계	초	중	고	특수	계
서 울	513,345	368,469	52,676	934,490	457,902	236,785	229,245	10,558	934,490
부 산	193,148	138,976	11,434	343,558	170,493	82,865	85,628	4,574	343,560
대 구	169,138	134,907	14,833	318,878	145,378	79,866	89,339	4,295	318,878
인 천	177,247	167,653	24,641	369,541	176,314	93,626	96,199	3,402	369,541
광 주	126,096	94,794	15,442	236,332	104,082	55,678	74,104	2,468	236,332
대 전	115,317	92,287	17,834	225,438	101,173	53,857	67,201	3,206	225,437
울 산	82,755	71,229	7,562	161,546	77,825	41,058	40,804	1,860	161,547
세 종	36,097	22,115	3,111	61,323	32,455	16,099	12,319	449	61,322
경 기	995,999	645,522	94,102	1,735,623	824,536	436,497	460,339	14,251	1,735,623
강 원	101,346	114,150	19,310	234,806	112,298	54,226	66,016	2,267	234,807
충 북	136,168	135,148	26,733	298,049	139,858	77,761	75,323	5,106	298,048
충 남	186,759	181,020	52,329	420,108	192,667	99,045	124,280	4,116	420,108
전 북	145,825	126,060	28,975	300,860	139,264	65,454	92,286	3,846	300,850
전 남	152,721	157,938	12,633	323,292	156,057	80,974	82,526	3,735	323,292
경 북	237,022	211,588	15,308	463,918	214,431	82,564	159,249	7,674	463,918
경 남	210,583	282,633	33,834	527,050	254,575	136,748	131,472	4,256	527,051
제 주	58,597	50,432	19,281	128,310	63,963	34,461	28,548	1,337	128,309
계	3,638,163	2,994,921	450,038	7,083,122	3,363,271	1,727,564	1,914,878	77,400	7,083,113

<자료 : 교육부_2023.09.11. 기준>

2. 학교급식 주요품목 등 생산소비 현황

(1) 식재료 유형별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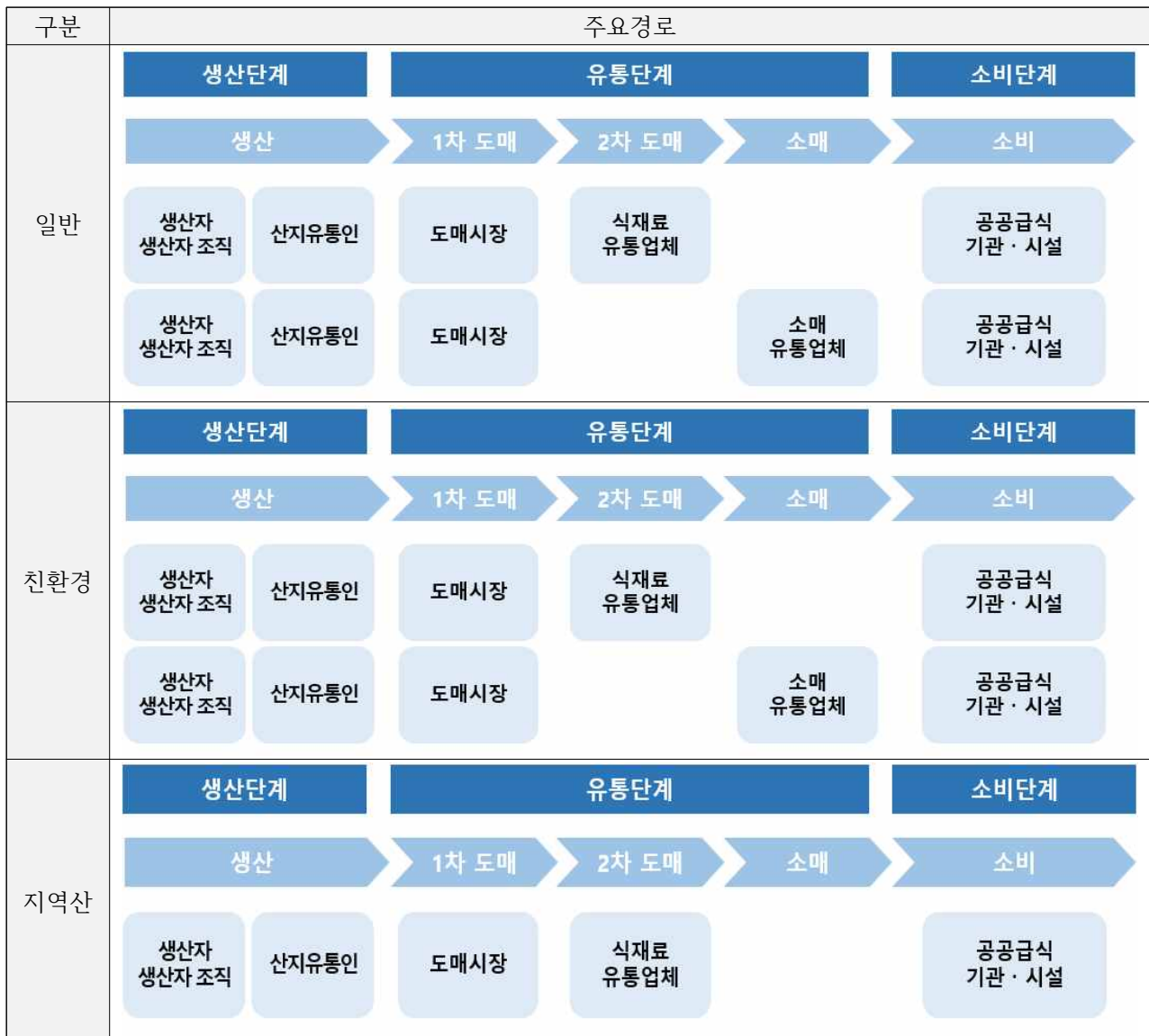
-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등의 식재료 공급경로는 유사하며, 산지와 도매시장을 거쳐 식재료 유통업체나 소매유통업체를 통해 공급되거나 급식 기관·시설이 식재료를 직접 구매함.
- 지역산의 경우 소매유통업체를 통한 공급보다는 식재료 유통업체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으며, 민간 공급업체에서는 일반농산물을 주로 도매시장을 통해 확보하였으며(54.8%),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자·생산자 조직(23.1%), 산지유통인·유통조직(19.2%), 도매시장(19.2%) 등이 주요 공급경로였음.
- 지역산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40.0%)과 생산자·생산자 조직(25.7%)을 주로 이용함.

< 표 2-13 > 식재료 확보 경로

구분	사례 수	식재료 확보 경로(%)							합계
		도매 시장	생산자 생산자조직	산지 유통인 유통조직	다른 식재료 유통업체	소매유통 업체	산지 계약재배	기타	
일반	31	54.8	12.9	6.5	12.9	9.7	3.2	-	100.0
친환경	26	19.2	19.2	19.2	15.4	11.5	3.8	7.6	100.0
지역산	35	40.0	8.6	8.6	14.3	2.9	2.9	5.8	100.0

< 자료 : 황윤제, 2019 >

< 그림 1 > 식재료 유형별 주요 공급경로



< 자료 : 황윤제, 2019. 10 >

(2) 식재료 소비정보

□ 연도별 소비량

< 표 2-14 > 연도별 소비량

단위: 톤 2020 2021 2022 56,428 100,545 189,514 46,659 72,445 95,418 24,222 29,523 35,975 5,021 7,882 9,366			분류	2021년 누계	2022년 누계	증감
			농산물	72,445톤	95,418톤	22,974톤▲
			수산물	7,882톤	9,366톤	1,484톤▲
			축산물	29,523톤	35,975톤	6,451톤▲
			가공식품	100,545톤	189,514톤	88,969톤▲
구분	2020		2021		2022	
	소비량	증감율	소비량	증감율	소비량	증감율
농산물	46,659	-	72,445	55.3	95,418	31.7
수산물	5,021	-	7,882	57.0	9,366	18.8
축산물	24,222	-	29,523	21.9	35,975	21.9
가공식품	56,428	-	100,545	78.2	189,514	88.5
합계	132,330	-	210,395	53.1	330,274	40.2

<자료 :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 식재료 소비정보>

- 식재료의 연도별 소비량 < 표 2-14 >과 같으며, 21년대비 22년에는 농산물이 22,974톤, 수산물이 1,484톤, 축산물이 6,451톤, 가공식품이 88,969톤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가공식품의 비율이 제일 높았음.

□ 분류별 소비품목

◇ 농산물

- 농산물 분류별 소비품목에서 20년 대비 21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양파(88.6%)이며, 그 다음으로 무(58.5%) > 감자(56.5%) > 멥쌀(56.0%) > 찹쌀(29.4%)임.
- 21년 대비 22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찹쌀(29.8%)이며, 그 다음으로 멥쌀(23.0%) > 감자(20.3%) > 무(17.2%) > 양파(5.1%)임.

< 표 2-15 > 농산물 소비품목

농산물									
구분	2020			2021			2022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1	멥쌀	9,711	-	멥쌀	15,151	56.0	멥쌀	18,630	23.0
2	양파	3,585	-	양파	6,763	88.6	양파	7,109	5.1
3	찹쌀	2,697	-	감자	3,790	56.5	감자	4,558	20.3
4	감자	2,422	-	무	3,711	58.5	찹쌀	4,530	29.8
5	무	2,341	-	찹쌀	3,490	29.4	무	4,350	17.2

< 자료 : 공공급식조달시스템, 2023>

◇ 수산물

- 수산물 분류별 소비품목에서 20년 대비 21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멸치(63.5%)이며, 그 다음으로 다시마(59.9%) > 낙지(57.6%) > 명태(49.8%) > 오징어(49.5%)임.
- 21년 대비 22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새우(85.7%)이며, 그 다음으로 다시마(36.6%) > 멸치(20.3%) > 오징어(15.0%) > 낙지(9.2%)임.

< 표 2-15 > 수산물 소비품목

수산물									
구분	2020			2021			2022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1	오징어	638	-	오징어	954	49.5	오징어	1,096	15.0
2	멸치	450	-	멸치	735	63.5	멸치	885	20.3
3	다시마	284	-	다시마	454	59.9	다시마	619	36.6
4	명태	250	-	낙지	383	57.6	새우	422	85.7
5	낙지	243	-	명태	375	49.8	낙지	418	9.2

< 자료 : 공공급식조달시스템, 2023>

◇ 축산물

- 축산물 분류별 소비품목에서 20년 대비 21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돼지고기(63.5%)이며, 그 다음으로 달걀(53.2%) > 닭고기(52.1%) > 오리고기(40.3%) > 한우(-64.0%)임.
- 21년 대비 22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닭고기(23.9%)이며, 그 다음으로 돼지고기(22.0%) > 달걀(21.5%) > 한우(16.0%) > 오리고기(19.1%)임.

< 표 2-16 > 축산물 소비품목

축산물									
구분	2020			2021			2022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1	돼지고기	7,580	-	돼지고기	12,011	58.5	돼지고기	14,650	22.0
2	한우	6,706	-	닭고기	8,112	52.1	닭고기	10,051	23.9
3	닭고기	5,334	-	달걀	3,802	53.2	달걀	4,620	21.5
4	달걀	2,481	-	한우	2,411	64.0	한우	2,798	16.0
5	오리고기	641	-	오리고기	899	40.3	오리고기	1,070	19.1

< 자료 : 공공급식조달시스템, 2023>

◇ 가공식품

- 가공식품 분류별 소비품목에서 20년 대비 21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두부(65.7%)이며, 그 다음으로 김치(59.9%) > 발효유(49.7%) > 주스(47.7%) > 콩기름(21.4%)임.
- 21년 대비 22년도에 가장 큰 증감율을 보인 품목은 주스(45.0%)이며, 그 다음으로 콩기름(44.5%) > 발효유(30.7%) > 김치(24.0%) > 두부(21.1%)임.

< 표 2-17 > 가공식품 소비품목

가공식품									
구분	2020			2021			2022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품목	소비량 (톤)	증감율 (%)
1	김치	7,211	-	김치	11,529	59.9	김치	14,295	24.0
2	콩기름	4,367	-	콩기름	5,302	21.4	콩기름	9,662	44.5
3	발효유	2,343	-	발효유	3,507	49.7	발효유	4,583	30.7
4	주스	1,989	-	두부	3,207	65.7	주스	4,261	45.0
5	두부	1,935	-	주스	2,938	47.7	두부	3,885	21.1

< 자료 : 공공급식조달시스템, 2023>

3. 충청남도 도내 시군 학교급식 주요 실적

(1) 충청남도 학교급식 현황

□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출규모

- 충청남도의 총 학교급식 지출은 420,111백만원이며, 식품비186,759백만원(51.4%), 운영비 181,021백만원(42.2%), 시설설비비 52,329백만원(6.4%)으로 분류되며, 학교 급별 분류는 초등학교 192,667백만원, 중학교 99,045백만원, 고등학교 124,280백만원, 특수학교 4,116백만원임.

(2) 광역급식지원센터 주요실적

□ 충청남도 학교급식 실적

현재 충청남도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산 친환경 · 우수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 지역 순환 식품 체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표 2-12 > 광역급식지원센터 주요실적

연 도	내 용
2020	1.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시·군 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2. 학교급식 지역 우수 식재료 및 전통장류 공급확대 - 학교급식 NON-GMO 우수식재료 지역 전통장류 공급 추진 - 학교급식 지역 식재료 공급사업 추진 - 학교급식 지역 수산물 공동구매 시범사업 추진
	3. 지역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정책 추진 -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 전문조직 육성사업 -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농산물 생산조직 육성
2021	1. 친환경 · 지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지역산 공급률 제고 - 지역산 수산물 공동구매 확대 및 매월 안정성 검사 실시 - 학교급식 지역 우수식재료 공급업체 위생기준 강화 및 선정 확대 - 학교급식 식품비에 보존식을 포함하여 급식현장 부담감소 및 급식 질 개선
	2. 학교급식 운영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 이용자 맞춤형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및 코드 간소화 추진

	-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시설보강으로 공공성 강화 - 급식센터간 식재료 과잉부족 정보공유 활성화 및 유통체계 개선
	3.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무상급식 및 친환경 식재료 지원 - 학교급식에 저탄소 식단 확산 및 충남 친환경·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인상
	4. 학교급식정책 개발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자 네트워크 강화 - 학교급식 관계자 정책자문 및 협의 기회 확대 - 시군센터간 정책공유 및 실무협의 확대 - 학교급식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지원 워크숍 개최
	5.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성 강화로 학부모·학생들의 신뢰도 제고 -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활동 재개 - 관계기관 합동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으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6. 지역 식재료 유통 효율 제고를 위한 학교급식 통합물류 지원
2022	1. 친환경 및 지역산 식재료 지원 - 지역산 · 식재료 시용 확대를 위한 무상급식비 지원
	2. 학교급식센터 운영 여건 개선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체계 개선 - 급식지원센터 컨설팅 등 운영활성화 및 시설 보강 지원 - 이용자 맞춤형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정성 강화로 학부모 및 학생 신뢰도 제고 - 관계기관 합동 학교급식 공급업체 점검으로 안전점검 실효성 제고 - 안전하고 우수한 ‘도 추천 우수 식재료’ 발굴 및 공급확대
	4.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관계자 협력 강화 및 인식개선 - 지역 식재료 공급 역량강화 사업 개선을 통한 생산자-소비자-센터간 협력체계 구축 및 시군별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대 유도
	5. 식생활 교육 확산으로 지역 식재료 인식 제고 및 소비 촉진 - 도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 전통 식문화 발전, 음식물 쓰레기 감소 등 사회·경제·환경 등 지속 가능성에 기여
	6. 지역산 농산물 소비연계 교육·캠페인 추진 - 식생활 교육 및 소비자 교육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지역농산물 소비 저변 확대
2023	1.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확대 -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고, 지역 농어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교육기관 등의 의무) 개정으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 50%이상 사용 노력 명시

	2.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 확보 - 센터별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성 검사, 학부모 건강 먹거리 지킴이단 운영 등 안전성 모니터링, 생산자 교육 지원
	3. 학교급식 관계자 민관협력체계 구축 - 생산자와 소비자가 참여하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조성으로 선도적인 충남형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
	4. 지역산 농산물 소비연계 교육·캠페인 추진 - 식생활 교육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지역농산물 소비 저변 확대

< 자료 : 충청남도청 내부자료, 2020~2023 >

(3)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 공급개요

- 2023년 3월~10월까지 8개월간의 식재료 총 공급규모는 20,662톤(165,226백만원)이며, 공급 대상은 14개 시군 13센터 유·초·중·고·특수 1,211개교의 257,000명의 학생에게 공급되었음. 공급 품목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임.
- 공급량의 비중은 가공식품(47.7%), 농산물(35.4%), 축산물(13.5%), 수산물(3.4%)임.

< 표 2-18 > 식재료 총 공급규모

구 분	공급량(톤)			공급액 (백만원)		
	전체	지역산	지역산 비율(%)	전체	지역산	지역산 비율(%)
계	20,662	7,737	37.4	165,226	58,267	35.3
농·축·수	10,816	6,930	64.1	87,157	51,890	59.5
농 산 물	7,320	4,948	67.6	38,745	24,546	63.4
축 산 물	2,797	1,875	67.0	36,325	25,308	69.7
수 산 물	699	107	15.3	12,087	2,036	16.8
가 공 식 품	9,846	807	8.2	78,069	6,377	8.2

< 자료 : 충청남도 도청 내부자료, >

□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 2023년 10월 지역산 식재료의 공급실적은 공급량 기준 전체 37.4%이며, 이중 농·축·수산물 64.1%로, 전년도 대비 0.1% 증가함.

< 표 2-19 >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및 분석 [공급량 기준]

(단위 : %)

공급실적	전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산	친환경			
22년	37.2	64.2	69.8	61.9	62.2	15.7	7.6
23년 10월 기준	37.4	64.1	67.6	60.1	67.0	15.3	8.2
전년도 대비	0.2	△0.1	△2.2	△1.8	4.8	△0.4	0.6

< 자료 : 충청남도 도청 내부자료, >

- 2023년 10월 지역산 식재료의 공급실적은 공급액 기준 전체 35.3%이며, 이중 농·축·수산물 59.5%로, 전년도 대비 0.1% 증가함.

< 표 2-20 >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및 분석 [공급액 기준]

(단위 : %)

공급실적	전체	농·축·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지역산	친환경			
22년	36.2	59.6	67.0	60.5	65.7	17.4	8.7
23년 10월 기준	35.3	59.5	63.4	57.0	69.7	16.8	8.2
전년도 대비	△0.9	△0.1	△3.6	△3.5	4.0	△0.6	△0.5

< 자료 : 충청남도 도청 내부자료, >

Ⅲ. 학교급식 관련 법률 및 현황

1. 교육부 소관 학교급식 관련 법령

(1) 학교급식 관련 법률 및 현황

- 학교급식에 관련된 법령은 중앙정부에서 교육부가 소관하고 있음.

□ 학교급식 정책 변화

-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일부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 이에 따라 1992년에 ‘학교급식 확대사업’이 시행되었음.
- 2000년대 이후 학교급식과 관련한 질적 요구가 확대되었고 위탁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학교급식법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직영급식전환이 추진됨.
- 2006년에는 전반적인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직영 급식 중심의 학교급식 체계가 구축됨.

□ 학교급식법

-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이용되는 식재료 구입과 품질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학교급식 시설·설비 기준, 제 3장 학교급식 관리·운영,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등에 관련한 사항임.

< 표 3-1 > 학교급식법의 구분

구분	주요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학교급식대상, 학교급식위원회 등
제2장 학교급식 시설 설비 기준	급식시설설비, 영양교사의 배치, 경비부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등

제3장 학교급식 관리 운영	식재료, 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지도, 영양상담, 학교급식의 운영 방식,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생산품의 직접 사용 등
제4장 보칙	학교급식 운영평가, 출입 검사 수거 등, 권한위임, 행정처분 등의 요청, 징계
제5장 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학교급식법 식재료 관한 규정(법 제3장)

-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관련된 법령은 제 3장 학교급식 관리 · 운영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음.

< 표 3-2 >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제10조 (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 및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학교의 장과 그 학교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이하 “학교급식 관계교직원”이라 한다)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축산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

	으로 적은 식재료 ②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 교직원 및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급식 대상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생산품의 직접사용 등)	학교에서 작물 재배·동물사육 그 밖에 각종 생산활동으로 얻은 생산품이나 그 생산품의 매각대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표 3-3 > 교육부령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_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관련) 2021.01.29.	
1. 농산물	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농산물을 사용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 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다. 쌀은 수확연도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라. 부득이하게 전처리(前處理)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을 사용할 경우에는 나목과 다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1)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2)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3)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4)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5) 내용량

6) 보관 및 취급방법

마. 수입농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2. 축산물

가. 공통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식용란(食用卵)은 공통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사용한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수입축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사용한다.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4) 계란: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3. 수산물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가 표시된 수산물을 사용한다.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수산물

1) 전처리수산물(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할 경우 나목에 해당되는 품목으로서 다음 시설 또는 영업소에서 가공 처리(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가공 처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된 것으로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생산·가공시설

나)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냉동수산물 중 어류·연체류 식품제조·가공업소

2) 전처리수산물을 사용할 경우 다음 사항이 표시된 것으로 한다.

가) 제품명(내용물의 명칭 또는 품목)

나) 업소명(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

다) 제조연월일(전처리작업일 및 포장일)

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마) 내용량

바) 보관 및 취급방법

라. 수입수산물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4. 가공식품 및 기타

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식품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 적합 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가공품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식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5)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가공식품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가공 또는 처리된 축산물가공품

8)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제조업소,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축산물 가공품

나. 김치 완제품은 「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는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한다.

다. 수입 가공식품은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가목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라. 위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령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예외

가. 수해, 가뭄, 천재지변 등으로 식품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이 표에서 정하지 않는 식재료, 도서(島嶼)·벽지(僻地) 및 소규모학교 또는 지역 여건상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품질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 학교급식법 제1장 5조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어야 함.
- 학교급식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구성됨.

< 표 3-4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2022.06.28.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이하 “학교급식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6. 28.>
- ② 학교급식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시·도교육청”이라 한다)의 부교육감(부교육감이 2인일 때에는 제1부교육감을 말한다)이 된다. <개정 2022. 6. 28.>
- ③ 위원은 시·도교육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국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보건위생업무 담당국장, 학교의 장,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이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6. 28.>
- ④ 학교급식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도교육청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 표 3-5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6조

- ①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학교급식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은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학교급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급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학교급식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지방자치단체 소관 학교급식 관련 조례

(1) 지방자치단체 학교급식 조례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는 일반적으로 목적 및 정의, 관련인 의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관련 위원회와 기타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전국 지자체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 현황은 < 표 3-6 >과 같으며, 경기도가 3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27건, 서울시 26건, 경북 25건, 충남 21건 순이다.

< 표 3-6 > 전국 지자체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 현황

광역·특별시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울산
학교(공공)급식지원	121	8	8	1	6	3	4	0	4
학교급식 식재료, 식품비 및 경비 지원	38	0	0	2	3	0	1	0	0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7	0	0	0	0	0	0	0	0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67	17	8	4	1	3	1	0	2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	13	0	0	0	0	0	0	0	0
방사능 등 유해물질관리	2	1	0	0	0	0	0	0	0
합계	248	26	16	7	10	6	6	0	6
광역·특별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학교(공공)급식지원	20	12	8	11	8	3	16	9	0
학교급식 식재료, 식품비 및 경비지원	2	3	1	0	5	13	2	6	0
학교 등 무상급식 지원	0	0	2	0	0	5	0	0	0

친환경(무상) 급식지원	7	2	0	3	1	6	7	4	1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운영	4	1	1	6	1	0	0	0	0
방사능 등 유해물질관리	0	0	0	1	0	0	0	0	0
합계	33	18	12	21	15	27	25	19	1

< 자료 : 정은미 외. (2019b).>

(2) 충청남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4년에 처음 제정하였고 2008. 12. 24에 전부 개정하였음.
- 충청남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 시행, 교육기관 등의 의무, 급식지원센터지원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음.

< 표 3-7 >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내용
제2조(정의)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 식재료 급식경비를 국가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시·군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친환경농수산물 등 우수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부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 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마.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

	리기준에 따른 식재료 바.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보증·추천하는 농특산물 4. 지역산 식재료"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농산물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중 도내에서 생산·가공된 식재료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친환경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식재료 우선 공급 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5.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및 급식경비 지원 사항의 공개 ② 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시장·군수는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 등 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의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농수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강한 식생활교육과 농어촌체험교육 등 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이하 "급식 프로그램"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4.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5. 급식지원센터 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교육기관 등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등의 토·일·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에 저소득층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지원대상, 지원방법, 재정분담 비율 등을 합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기관 등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 등의 장은 도지사 및 교육감, 시장·군수의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 요구 등이 있을 때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소속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시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 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사용 비율을 10분의 5 이상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품목군별 지역산 식재료 사용 비율을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급식지원센터 지원)	① 도지사는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 사업의 정책·교육·홍보 등을 위해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IV. 충청남도 학교급식정책 지원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시

1.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파악 및 운영현황 분석

< 표 4-1 >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현황 파악 및 운영현황 분석

지역	운영 주체	취급 품목	학교 수	학생수 (천명)	특징	개장일
천안시	천안 조공 법인	전품목	247	89	- 유통물류시설 有 (전처리시설, 부류 및 집하시설, 저온저장고 등) 효율성 제고 - 전문경영의 체계성 - 지역 농가 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 학교급식관련 지역사회와의 소통 - 2022년 공공급식사업 추진	2016
공주시	우성 농협	전품목	83	10	- 2015년 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 - 행정직영 + 물류위탁의 형태로, 의사결정 및 조달은 행정이, 운·배송물류는 물류센터 담당 - 로컬푸드 연계형 학교급식지원시설	2016
보령시	보령시	전품목	83	9	- 보령시 직영형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공감대 확산, 상호 간 신뢰 확보,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통한 로컬푸드 질적 성장 도모	2017
아산시	아산 원예 농협	전품목	143	51	- 아산시 관리직영형(유통직영형) - 아산시농협조공법인-생산관리 - 아산원예농협-물류 전담 등 기능 및 역할 분담	2013
서산시	서산시	전품목	93	21	- 서산시 직영형 - 지역에서 생산된 고품질·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부터 식재료 수발주, 검수, 물류 관리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며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망을 구축 - 식재료 공급 수수료를 도내 직영 센터 중 최초로 폐지해 실질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식재료 구입 부담 경감, 다양한 식품군 구성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2018

논산·계룡시	논산 계룡 농협	전품목	104	18	- 2016년에 설립되어 위탁 운영형	2016
당진시	당진시	전품목	89	21	-거점 APC 시설 이용 확대 -식재료 공급의 체계적인 유통시설 구축	2011
금산군	없음	없음	44	4		-
부여군	부여군	전품목	61	5	- 2023년부터 식재료 공급 수수료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배송 물류비는 전액 군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연간 3억 5천여만원을 식품비로 활용하여 더 나은 양질의 급식을 공급 예정	2015
서천군	서천군	전품목	51	4	- 서천군 직영형 -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	2018
청양군	청양군 지역 활성화 재단	전품목	31	2	- 지역농업인 조직활용/농가 조직화 - 지역 농가 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 지역 우수 및 친환경 농산물 공급 원칙 수립 - 관리 기능의 중간 지원조직역할 수행	2014
홍성군	홍성군	전품목	62	12	- 행정 주도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지역사회 합의를 학교급식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지역농업인 단체, 농협, 사회적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밀착형 센터	2014
예산군	예산군	전품목	67	7	- 예산군 직영형으로 운영 - 2023년부터 공공급식사업 추진	2017
태안군	태안군	전품목	51	5	- 태안군 직영형으로 운영 - 태안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내에 위치	2017

< 자료 : 공공데이터 포털, 2023.03.05. >

2. 충청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

충청남도 도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공공급식에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우리나라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점점 감소하고 있는 농업소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제도는 학교급식에 지역의 우수 식재료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식사와 건강을 제공하고, 지역 생산자들에게는 학교급식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음. 충청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개 센터 중 천안시,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사례를 비교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고자 함.

(1)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천안 관내 12개 농협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여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그린’의 통합 마케팅 및 판촉활동 등 농산물 유통사업과 천안시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현재 공공급식사업에 추진하여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매년 계약재배 농가가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확대함에 따라 식재료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음.

□ 일반현황

< 표 4-1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센터명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민간위탁)
대표이사	홍 승 주
소재지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광풍로 1544
설립인가	농림축산식품부 2013-89호(2013. 12. 30.)
출자농협	관내 12개 농협(각 5억원씩 총 60억원 출자)
직원현황	현원 25명 (대표이사 1, 본부장 1, 기획총무팀 4, 급식지원팀 4, 전산지원팀 7, 물류지원팀 6)
배송차량	총 82대 운영 (자차 14대, 위탁 68대)

< 자료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

□ 시설현황

< 표 4-2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주요시설
법 인	6,612 m^2 (2,000평)	법 인	2,160 m^2 (655평)	검수실, 저온저장고, 입출고 전실, 사무실, 회의실, 기타 (화장실, 식당, 창고)
천안시	6,612 m^2 (2,000평)	천안시	1,322 m^2 (400평)	
합 계	1,3224 m^2 (4,000평)	합 계	3,482 m^2 (1,055평)	

< 자료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

□ 천안산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

- 천안산 농산물 계약재배 농가 수는 2021년 178개, 2022년 208개, 2023 214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표 4-3 > 천안산 농산물 계약재배 현황

	구분	계	근채류	과채류	엽채류	서류	과실류	버섯류	기타
2021	농가수(호)	178	49	45	30	47	41	14	2
	면적(ha)	85.5	14.1	20.2	14	9.8	24.2	2.5	0.7
	품목수(개)	97	10	27	26	6	18	6	4
	약정량(kg)	986,726	363,350	219,764	150,958	78,290	133,974	39,140	1,250
2022	농가수(호)	208	55	45	41	57	41	15	17
	면적(ha)	112.1	19.7	22.7	14.8	17.3	26.3	7.7	3.5
	품목수(개)	116	13	34	30	8	18	8	8
	약정량(kg)	869,045	328,560	163,657	138,779	89,233	103,075	45,011	730
2023	농가수(호)	214	45	25	42	44	102	13	5
	면적(ha)	155.0	26.0	9.1	21.0	13.9	76.5	7.1	1.3
	품목수(개)	116	9	16	28	8	36	12	7
	약정량(kg)	886,325	320,897	83,940	152,648	83,750	197,927	45,171	1,992

< 자료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

□ 특징

< 표 4-3 >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징

특징	1. 친환경 농산물은 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라는 생산조직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
	2. 가격 결정 과정에 생산자 의견이 다소 반영되고 있음.
	3. 식재료 단가가 한 달 단위로 고정되어 있음.

< 자료 : 이상윤, 2017 >

(2)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충청남도에서 두 번째로 설립됨. 학교급식 관련된 아산시의 특징은 천안시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다는 것과 대규모 광역친환경농업단지와 한 살림 아산시 생산자 연합회가 위치하고 있음.

□ 일반현황

< 표 4-4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일반현황

센 터 명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아산원예농협 위탁)
소 재 지	아산시 염치읍 충무로 358번길 13
직원현황	현원 10명 (센터장 1, 관리팀 6, 영업팀 4)
배송차량	총 56대 운영 (농산, 미곡 등 22대/공산, 축산 등 34대)

< 자료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

□ 시설현황

< 표 4-5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주요시설
규모	2,980 m^2 (900평)	규모	1,749.34 m^2 (529평)	소분포장(박피실), 전처리시설, 가공실, 저온창고, 상온창고, 기타시설

< 자료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

□ 전체 농산물/공산품 취급현황

< 표 4-6 > 농산물/공산품 취급현황

구분		공급량	총 매출액	비 고(비율)
계		4,715	29,188	100%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792	3,434	16.32%
	일반농산물	311	2,625	12.47%
	소계	1,103	6,059	28.79%
김치		197	868	4.12%
축산물		213	4,052	19.26%
수산물		97	1,628	7.74%
우유		87	316	1.50%
가공품		932	7,003	33.28%
가금류		115	1,117	5.31%

< 자료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홈페이지 >

□ 특징

< 표 4-7 > 아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 특징

특징	1. 가격결정방식에 생산자 의견이 반영되고 있음.
	2. 친환경 농산물 공급구조에서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수료는 일반 급식업체에 비해 상당히 낮은 비율임.

< 자료 : 이상윤, 2017 >

(3) 천안·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별 특징

- 천안·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두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물류는 외부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천안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처음부터 행정직영의 방식으로 개장한 반면,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개장하였으나, 2016년 1월부터 아산시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하고 있음.

3.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

(1) 공공급식 활성화 방향성 제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고,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를 공공급식으로 활성화 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공공급식에 대한 인식 및 위상 제고

- 공공급식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영양(교)사의 식재료에 대한 인식개선, 소비자 인식개선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둔 정책 추진 등을 시행하는 방안 제시

□ 국가 단위의 공공급식 방향 설정

- 지역농산물 식재료 중심의 공공급식 추진 방향 설정과 함께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공공급식을 추진하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공공급식 정책 사업 전개
- 현물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며, 지역푸드 인증활성화,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설립 확대, 공공급식 기관별·지역별 급식 단가 표준화, 급식지원센터의 식생활 교육 확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공급식 정책 및 사업 추진,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중심의 조례 통합, 공공기관별 급식체계 표준화

□ 제도적 관점

- 공공급식에 대한 별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적조달체계에 대한 수의 계약 규제 완화 또는 공적조달체계에 대한 별도 계약 관련 제도 구축
- 공공기관 경영평가 관련 급식지원센터 이용 시 가점을 부여, 혹은 일정 규모 이상 사 용 의무 제도화, 최저 생산비를 보장받는 기준단가 제시

□ 공적조달체계를 통한 공공급식 시장 확대

- 행정 주도형에서 공적조달체계를 통한 공공급식 시장을 우선적으로 확대하고, 군 급식에 대한 급식지원센터 중심의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과 공공기관 등 사회적 공헌 차원

의 국가 단위 협약을 통한 지역 먹거리 소비 확대

- 지자체 먹거리 관련 먹거리 부서통합, 지역 푸드플랜 수립 확대, 도시 지자체의 지역 로컬푸드 중심 공공급식 추진사례 확대, 지자체 공공급식 조례 제정 확대

□ 급식지원센터간 연계 활성화 및 전국 시·도 단위 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 급식지원센터간 연계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급식지원센터 거점화로 급식지원센터간 연계 및 효율성 제고, 급식지원센터간 연대를 통한 위상 강화

□ 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 지자체 공공급식 추진 가이드라인 메뉴얼 개발, 기존 급식업체와의 갈등 해소 방안 사례 제시, 급식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통합 수발주 프로그램 개발·보급

□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 지자체의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지원, 먹거리 관련 민간 네트워크 조직 양성 및 연계, 거버넌스 참여 위원 대상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는 활동·역량 및 자부심 고취, 급식지원센터의 거버넌스 기반 정책 제안 프로세스 정립, 민간 조직간의 먹거리에 대한 인식차이 해소
- 지역 푸드플랜에서 제시한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계획의 실행, 불필요한 거버넌스 구성 지양, 우수 민관 거버넌스 사례 발굴 및 전파

4. 농가조직화 및 기획생산 등 참여방법

(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의 필요성

□ 지역차원 : 안정적인 수급체계 마련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지역 농산물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획생산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학교급식은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공공성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공공성의 확보가 필요함.

□ 소비차원 : 미래의 건강한 소비자 육성

- 학교급식의 대상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함.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바른 식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의 고유한 식문화를 계승, 전수하여 다양한 먹거리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미래의 건강한 소비층의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생산차원 : 지속가능한 지역 농업 유지

- 지역의 생산자들에게는 지역의 안정적인 소비처가 확보되어 지역의 먹거리 생산에 전념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 학교급식 참여 농민의 증대는 결국 지역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하여 지역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을 지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충청남도 학교급식 농가 조직화 구축방안

충청남도 학교급식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도농상생의 먹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따라 통합적인 농가 조직화를 통해 기반을 조성해야 함.

농가 조직화는 기존의 로컬푸드 농가와 먹거리 체계 내에서의 생산의 지속가능성과 유통, 소비 측면의 다양한 요구의 접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를 할 전담 조직이 필요함.

□ 학교 급식 공급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체계 구축

①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사업 참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먹거리 체계 영역 내에서 관리 및 육성될 수 있도록, 생산단계 영역의 농가 역할에 대해서 고지하고 동의·참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역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대상으로 구분함.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농산물 수요에 대해 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뒤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출하 농가에 대한 사전 예상 출하량을 취합하고 예상 수요량과 비교하여 과부족에

대해 파악함.

③ 품목별 출하 쏠림 현상 및 연중 출하가 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 농가 조직 자체의 조절 체계를 확립하고, 품목별 작부체계를 구축함

- 재배 의향이 현실 조건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거나 다수 농가가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사전 안내 및 생산관리 교육을 진행하여 조정해야 함.
- 생산자들이 선호하는 품목과 선호하지 않는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품목의 생산을 위해서 기피 품목과 비선호 품목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이에따라 적절하게 배정해야 함.

④ 부족 품목에 대해 재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으로(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 교통약지 지원 등) 연중 출하를 위해 체계를 마련함.

□ 단계별 관계시장 공급체계 구축

- 학교급식 → 공공기관 급식 → 복지급식 등 단계적 공공급식 공급체계를 확대함

① 충청남도 시·군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지원 사업을 통하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유·초·중·고 학교에 식재료 공급

② 충청남도 시·군별로 다양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협약하고, 지역농산물 사용에 따른 차액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전체로 지역농산물 식재료의 공급을 확대

③ 먹거리 취약계층 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아동,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종합복지관, 경로당, 노인요양 및 복지시설의 급식, 도시락, 반찬 등 다양한 지원체계에 맞춰 먹거리 공급을 확대

④ 이외에 지역 외식업체, 가공업체, 일반사업체 등 지역 농산물을 원부재료로 사용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공급을 확대해 민간 영역 부분까지 공급가능한 공공물류체계를 구축

(3) 작부체계 및 농가조직화 사례

□ 홍성군 사례

홍성군 사례의 경우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따라서 다른 농산물도 충분히 확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학교급식과 기존 농산물 판매 분리하며, 자체 유통망을 확보한 업체가 실시함.
- 친환경 농산물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일반 농산물은 홍성군직거래영농조합, 전처리농산물은 사회적 기업인 (주)지랑, 축산물은 지역 내 축산업체(공고 시행), 수산물은 거제 산 수산업체(HACCP인증 업체), 친환경 쌀은 홍성관내 3개 RPC(단가 동일, 홍동농협/천수만RPC,하누리회관), 지역가공식품은 홍성풀무, 찰떡궁합, 다살림, 홍성유기농영농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음.
- 홍성군의 경우도 여전히 농산물 관리는 품목별 비품, 규격화 및 표준화되지 못하는 등 품질 문제가 관건이지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는 중이며,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자단체가 연간 작부체계를 수립하고 계획생산, 생산관리를 책임지는 형태를 도입함.

□ 보령시 사례

보령시 사례의 경우 생산자 조직을 우선 행정에서 관리해주는 방식의 사례임.

- 보령 친농연 회원은 50회원이며,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납품농가는 15농가임(쌀 포함 시 30농가)
- 버섯은 양송이 작목반이 참여하고 있음.
- 보령시 학교급식은 68억원~70억원 매출이며, 농산물이 20~22억원을 차지하고 이중 약 50%가 친농연 출하분이며, 나머지는 일반 농산물 공급분임.
- 보령 친농연 10억원 중 20% 수수료를 하면 2억으로 법인을 운영해야 하는데, 2억으로 작부구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작부구축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이 필요하며, 행정에서는 농가를 잘 관리하는 건전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함.

□ 울산 복구 사례

울산 복구는 학교급식지원사업을 하면서 생산자 관리를 한 사례임.

- 수급 품목이 당근, 양파의 2가지 품목만 있었던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함.
- 초기 농협 작목반으로 구성했지만, 관리가 되지않아 농수산과가 친환경작목반을 구성하면서 1년 반 정도 지나 연간 40개 품목이 공급됨.
- 수급이 안되는 작물은 인근 지역에서 수급하는 체계도 구축됨.
- 행정에서는 친목모임 성격의 “계”를 만들어 생산자를 관리함.

[부록 1] 농가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1) 인터뷰 내용

○ 인터뷰 내용 : 소규모 혹은 대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겪고 있는 고충,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정책, 관내 부족한 품목과 관외에서 공급받는 품목, 중간유통 업체를 끼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 방법

□ 인터뷰 결과

○ A 학교급식지원센터

질문 1.	OO시는 대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겪고 있는 고충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굳이 하나 말하자면 물류비?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물동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차도 많이 쓰고 사람도 많이 써야되고 그런 환경이긴 하죠. 규모에 따른 사업성은 같이 딸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고충인 거 같아요.
질문 2.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농협이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들이 많은데, 도에서 항상 요구하는 친환경 정책 지역 친환경 농산물 70% 사용해라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정책적 방향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뭐 없애라 이런게 아니라, 지역에서 소비체계를 만들려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을 가리지 않고, 이 지역산을 소비할 수 있게끔 뭔가 정책적인 방향도 가주고, 예산이 지원되었으면 좋겠어요. ... 우리 지역의 경우 농가 조직화는 끝났습니다. 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지션이 다 작물별로 차 있고 여기서 하려면 새로운 작물을 하셔야 하는데, 새로운 작물을 시도하려면 시설에 투자해야 할 수도 있고, 농산물에 대해 배워야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그걸 준비해서 했어요. 해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고 투자했던 것에 대해 뭔가 판매되게끔 정책적으로 뭔가 가줘야 되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제가 여러 해 운영을 해봤는데 너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친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건 알겠지만 농업에 지원하는 정책들이 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맨날 친환경에만 베풀어주고 그러는거 같아서.. ... 몇 년 전 도에서 식품비가 과도하게 많다 그래서 190일에 등교 인원수를 따져 집행하라는 제약을 걸었는데, 그 제약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식품비가 물가 상승하

	는 속도를 크게 따라가지 못해서 영양사선생님들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식품비를 100만원을 주고 친환경 차입 식품비를 10만원을 줬어요. 친환경만 선택해서 10만원어치 사용을 하면 다 차감되고 끝나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친환경 식재료 1000원짜리 시키면 35%만 그니까 350원만 쓸 수 있어요. 지금은 %가 다 걸려있으니까 계산해서 써야되고 뭐 그런 상황이 오는거죠. ... 올해부터 도교육청과 도청이 식품비라는 운영비를 분담 비율로 해서 오게 되는데, 예전에는 식품비 100%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70%는 교육청이 30%는 도비 시비로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지자체 30%는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오는데 나머지 70%는 학교로 가고있어요. 이렇게 되버리면 우리가 계산서를 끊어서 돈받고 이걸 건건히 다해야하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정산이며 뭐며 여러 가지가 꼬여있어요. 이것 때문에 현물 급식도 차질이 생겼구요. 그래서 재원분담을 못한다면,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 각 센터로 올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물로 학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3.	식재료 조달에 있어 관내 부족한 품목과 관외에서 공급받는 품목이 있습니까?
답변	보통은 작부체계가 있다. 이러면은 일부만 관외를 사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재배 환경과 생산시기가 다 다릅니다. 안나올때는 당연히 외부 것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질문 4.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는 품목들이나 이런거에 대한 학교급식 소비량을 알아야 해요. 소비량은 대품목 위주로 나열해놓고, 해당 품목에 대한 모집을 해야죠. 제가 다시 할 수 있다면 적정소비량을 먼저 따져놓고 이 감자가 10명이 했을 때, 한 명이 가져갈 수 있는 소비가 적정하다는 것을 미리 봐놓고서는 10명만 하는거죠. 데이터를 먼저 파악한 다음. 그다음으로는 공개모집을 하셔야 해요. ... 만약에 감자 재배를 하겠다는 농부가 10명이 들어왔으면 월별로 데이터를 쭉 넣고 소비량이 이정도 나오니까 1/n로 나누어주고, 이때는 이농가 이때는 저농가 이런식으로 자료를 다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대신 이 약속한 물량을 다른 시장의 경우 다 팔아주지만 학교급식의 경우 그게 아니다. 다 팔아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해를 심어줄 수 있게 교육을 잘해야 될 거 같아요. ... 어느정도 센터에서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해요. 신규 농가를 상황에 따라서 센터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과밀품목이거나 이런 경우에 신규참여 농가들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재배 관리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규정 같은 것도 시에서 만들어놓고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 B 학교급식지원센터

질문 1.	OO군은 소규모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속하는데, 이로 인해 겪고있는 고충은 무엇입니까?
답변	너무 소규모이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공급량이 너무 작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학교들은 양을 조금씩 시키시잖아요. 업체에서 만약에 적은 경우면 양배추 0.3kg 이런 식으로 발주하시는데, 업체는 그럼 이걸 자르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다 보니 단가가 비싸요. ... 그리고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쪽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이 사업단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아오시는데 XX군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거죠. 그런게 소규모라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 물량은 적는데 서로 갖춰야 될거는 다 똑같이 갖춰야 되고 근데 뭐 갈때마다 이것을 여기서 뭐 업체에서도 이걸 다 쌓아놓고 파는 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이 브랜드 이 제품 때문에 그때 뭐 갖다와야 되고 그런거
질문 2.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답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점화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충남 대부분 지역의 학교들이 점점 다 소규모화 될텐데 학교급식센터 아무리 운영해봐야 점점 유통할 수 있는 양이 적어지잖아요. 차라리 거점화로 체계적인 식단 관리도 하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질문 3.	식재료 조달에 있어 관내 부족한 품목과 관외에서 공급받는 품목이 있습니까?
답변	친환경 식재료의 대부분이요. 저희 출하회가 있긴한데 실질적으로 납품되는 품목 가짓수도 적고 양도 적고 그러니까 친환경 대부분은 다 관외제품이죠. 학교에서도 말나오긴했었어요. 예산상 친환경을 쓰고 싶어도 없으니까 관외꺼를 비싸게 주고 사는 셈 아니냐 말씀하셨어요. 친환경 같은 것도 ○○산이든 뭐든 다 충남산이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단가 하는데 여기는 업체 통해서 들어오니까 개네가 가는 수수료 떼고 이쪽 수수료 떼고 하니까 점점비싸져요.
질문 4.	지역농산물의 경우 중간유통업체를 거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유통이되는 형태인데, 중간유통업체를 끼지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게 되는데가 충남에 청양 있잖아요. 청양은 재단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기도 하거든요. 방법은 저희가 재단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농가가 조직화 되가지고 사업자를 내거나 저희가 농민한테 직접 돈은 못줘요. 보조금을 못주니까 업체를 통해서 주는 건데, 업체를 통하면 수수료가 20%넘게 떼고 그리고 가면은 비싸잖아요. 저희도 농가하면 훨씬 좋죠. 가격도 훨씬 저렴해지고 근데 방법이 재단만들기 쉬운 것도 아니고 농가 조직화하라고 하면 또 안해요.

질문 5.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정말 힘든데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저희가 이거에 대해 식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해보는거라서 너무 힘든데, 제일 문제 되는 건 일단 이분들한테 뭘 지으세요. 감자면 감자다 지으세요. 하고 나서 이걸 지었는데, 저희가 못 팔아줄 수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갑자기 뭐 안 시켜먹거나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감자나 양파 당근 이런건 많이 쓰이긴 해서 다 팔리긴하겠지만, 사실 품질이 떨어져요. 저희 지역을 믿고 한건데 자꾸 클레임 걸리고 품질도 좀 떨어지고 뭐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잉여 생산물 같은 경우 저희가 처리를 해줄 수가 없죠.

○ C 농가

질문 1.	농민들의 대표로서 농민들이 겪고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대감만 가지고 참여한 농가들이 실제 해보니까 소득은 별로 안되는거죠. 단가문제가 아니에요. 단가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단가는 좋아요. 사실 돈되는 품목이 몇 개 안돼요. ... 마늘이나 양파, 감자 뭐 이런식으로 몇가지 금액이 큰 품목이 있는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 농민운동을 하니까 지역 농가가 참여를 해서 돈을 좀 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내가 홍보도 많이 해주고 했었는데, 왜 현실적으로 안되냐. 마늘을 내려면 일단은 까야 되잖아요. 그런데 까는 기계가 5억씩 들어가요. 농가가 5억이 어디있겠어요. 법인이고 뭐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지원이라도 받을 때 보조라도요. 개인이 혼자 마늘 깐다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 마늘을 까도 마늘 꼭다리를 다 쳐야 돼 그거를 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해 인력이 확보된다고 뭘 소용이 있어요. 그걸 또 소분하고 소포장해서 담아야 하고, 하다못해 진공 포장기고 뭐고 다 있어야돼 기계가 그러려면 결국 마늘 까기 공장을 해야해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난관이 되는 부분이 뭐냐 그걸 또 배송해야해요. 아침 7반에 나가서 돌아오면 12시예요. 반나절이나 까먹는거죠. 그러니까 농사짓는 비용보다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드는거예요.

[참고문헌]

- 황윤제 외 3명. 2019. 10.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상택. 2022. “급식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공공급식 추진실태”. 농정연구센터
- 홍연아 외 2명. 2022. 06. “공공급식 자기부담금이 친환경/지역산 식재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충섭. 2017.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실태 및 로컬푸드 공급의 확대에 대한 개선방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지혜 외 9명. 2022. 12.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사)소비자와 함께. 2019. 02 “도농상생공공급식의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위한 학술용역 사업보고서”
- 이상윤. 2017.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의 인식도와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 충남 3개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강마야. 2017. “서산시 학교급식현물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지연. 2021. “지방정부의 푸드플랜 운영방식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역유형별 특성을 중심으로”
- 김종화. 2017. “충남 학교급식지원센터 실태와 발전방안” 충남리포트
2023. 10.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공급실적”
- 2020-2023.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내부자료)”
- 2020-2023. “천안시학교급식지원센터 내부자료”
- 참고 홈페이지 -
- 교육부 www.moe.go.kr
- 천안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http://www.canhfood.or.kr/index2.php>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충남학교급식지원센터 https://localfood.chungnam.go.kr/localfood/pages/sub01_01.do?gbn=2
-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https://ns.eat.co.kr/NeaT/eats/index.html>
-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